與, 종부세 '갈팡질팡'…稅논의 없다더니 "배제하지 않는다"

부동산특위 첫 회의…종부세 포함 과세·공급·대출 모두 검토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종부세 완화 혼선…내달 중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보완책으로 당내 일각에서 거론됐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부동산 정책의 보완 입법을 주도할 기구인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등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배제하지 않겠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주택공급, 대출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비롯한 과세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까지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전날 부동산특위의 논의 테이블에서 종부세 등 세금 완화를 제외하겠다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종부세, 재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해서 여러 주장이나 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변인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특위의 대변인격인 유동수 의원도 특위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냈고 그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가격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부분도 보고했고 행안위에서도 논의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부동산특위 참석 뒤 기자들에게 "당분간 (논의를)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나 주택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라며 "상임위에 (종부세 완화) 법안이 제출됐는데 논의 자체가 안될 수 있겠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를 놓고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반발을 사는 '부자감세'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세금제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도 터져 나오면서 당내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해 결론 도출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美 대북정책 기대감 보인 文대통령… "남북미 대화 복원 희망"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 판문점 선언 3주년 메시지 발신
"5월 한미 정상회담, 대북정책 방향 정립 계기 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인 27일 남·북·미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종 검토 중인 대북정책 속에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비중있게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발표할 대북정책 최종본을 확인하고, 이후 본격적인 정책이행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싱가포르 선언 계승 위에서 북미 간 멈춰버린 비핵화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인식을 꾸준히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남북미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희망 의제를 미리 밝혀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실패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양측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 2주년 메시지와 달리 올해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판문점 선언 3주년 메시지에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한 것도 지난해의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당위적 표현으로 읽힌다.

또 현재 한반도 상황을 빗대 '미완의 평화'로 규정한 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평소 인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 위에서 할 수 있다.

뉴시스

순천시 공고 제2021 - 103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순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순천시 덕암동 45번지 일원에 「주택법」제15조,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8.

순 천 시 장

1.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1. 4. 28. ~ 2021. 5. 12. (14일간)
 나. 열람장소 : 순천시청 건축과,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2. 관계도서 : 계재생략(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및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061-749-6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 구암A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68,200	감)5,723	62,477	100.0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8,200	감)5,723	62,477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	순천시 덕암동 303-11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62,477	• 구암A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비고
변경	37	순천 구암A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 덕암동 303-11번지 일원	68,200	감)5,723	62,47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37	순천시 덕암동 303-11번지 일원	62,477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지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 신규 구암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기존 구암A지구 일부구역편입에 따른 구역계변경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등급	규모 류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기정						1,774 (1,003)					
기정	중로	2	9	15	보조간선도로	992 (221)	중1-3 생목41-2대	대1-2 연향420-3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23 (223)	중2-12 덕암362-3답	소2-232 덕암322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9	8	국지도로	122 (122)	소2-233 덕암188-72도	소로1-23 덕암301-1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2	8	국지도로	108 (108)	중2-9 덕암185-6대	소2-229 덕암347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3	8	국지도로	308 (308)	중2-12 덕암367-4답	소2-232 덕암31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4	8	국지도로	21 (21)	중2-9 덕암184-5창	소2-233 덕암184-5창	일반도로		

( ) 정비구역내 포함부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불허	-	
	권장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한 별표4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 창고시설로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건 폐 율		60%	
용 적 율		250%	
높 이		-	
층 수		15층 이하	
연 면 적		적용하지 아니함.	
대지면적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60㎡이상으로 권장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지구내 향토적, 문화적 자원과 자연발생적 경관지역은 보존호보 ○ 도시의 향토성을 간직하고 계절성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 식재 ○ 건축·신축시 한옥, 가옥을 신축토록 유도(남향배치) ○ 노후화된 시멘트블럭 담장 철거후 옛고을을 연상하는 전통담장 및 정원조성 ○ 가로시설물, 안내표지판 마을게시판 등은 순천시 광고물 정비 규정에 맞는 체새과 규격으로 정비	
환경보전	○ 모든공사는 친환경적인 제품과 재질로 사용하고 자연훼손은 최대한 줄이고 사면은 전면녹화토록 한다. ○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집중관리하여 시행 ○ 매력있는 도시경관은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 적극관리 ○ 경관작물재배 유도 및 도로개설 시 대규모 법면발생 억제	
재난방지	○ 도로개설시 기존 우수 및 오수 배출은 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도로의 지반고에 맞추어 건축하도록 하며 가능한 불연재 사용을 권장	

■ 구암B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42,345	감)970	41,375	100.0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345	감)970	41,37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	순천시 덕암동 100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41,375	• 구암B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변경에 따른 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면 적 변경	면 적 변경후	비고
변경	38	순천 구암B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 덕암동 100번지 일원	42,345	감)970	41,37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변경	38	순천시 덕암동 100번지 일원	41,375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소로1-460호선, B=10m, L=104m)에 따른 기존 구암B지구 일부구역편입에 따른 구역계변경 및 면적산정 착오에 따른 선형 조정 반영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비고
계		1개소		140	-	140	
기정	3	공공공지	순천시 연향동 1166-2도 번지일원	140	-	140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불허	-	
	권장	○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한 별표4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 창고시설로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건 폐 율		60%	
용 적 율		250%	
높 이		-	
층 수		20m(5층)이하	
연 면 적		적용하지 아니함.	
대지면적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60㎡이상으로 권장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지구내 향토적, 문화적 자원과 자연발생적 경관지역은 보존호보 ○ 도시의 향토성을 간직하고 계절성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 식재 ○ 건축·신축시 한옥, 가옥을 신축토록 유도(남향배치) ○ 노후화된 시멘트블럭 담장 철거후 옛고을을 연상하는 전통담장 및 정원조성 ○ 가로시설물, 안내표지판 마을게시판 등은 순천시 광고물 정비 규정에 맞는 체새과 규격으로 정비	
환경보전	○ 모든공사는 친환경적인 제품과 재질로 사용하고 자연훼손은 최대한 줄이고 사면은 전면녹화토록 한다. ○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집중관리하여 시행 ○ 매력있는 도시경관은 훼손하지 않도록 건축물 적극관리 ○ 경관작물재배 유도 및 도로개설 시 대규모 법면발생 억제	
재난방지	○ 도로개설시 기존 우수 및 오수 배출은 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도로의 지반고에 맞추어 건축하도록 하며 가능한 불연재 사용을 권장	

■ 구암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가.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26,352	-	26,352	100.0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352	-	26,352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비고
신설	60	구암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천시 덕암동 45번지 일원	-	증)26,352	26,35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 사유
신설	60	순천시 덕암동 45번지 일원	26,352	○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등급	규모 류별	규모 번호	규모 폭원(m)	기능	연장(m)	위치 기정	위치 증정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9	15	보조간선도로	992	중로1-3 생목동28-83	대로1-2 연향동420-3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9	15-18	보조간선도로	992 (118)	중로1-3 생목동28-83	대로1-2 연향동420-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9	12	집산도로	275	대로1-2 연향동418-14	소로2-230 덕암동39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39	12	집산도로	317 (41)	대로1-2 연향동418-14	연향동130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60	10	국지도로	104	중로2-9 덕암동80-5	중로3-39 덕암동1306-20	일반도로			

※ ( )은 사업대상지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안)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 2-9	중로 2-9	• 일부구간 폭원 확폭 - B=15m → 15m~18m	• 주택건설사업구역 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폭원 확폭	
중로 3-39	중로 3-39	• 노선연장 - L=275m → 317m(증41m)	• 인근 주택지 접근성 향상 및 장기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중로3-39호선 종점구간 노선연장(증 41m)	
-	소로 1-460	• 신설 - L= 104m, B=10m	• 주택건설사업구역 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신설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획지번호	획지 위 치	획지 면적(㎡)	비 고
-	A-1	26,352	①	덕암동 45번지 일원	24,413	공동주택용지
			②	중로2-9호선, 중로3-39호선 소로1-460호선	1,939	도로용지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0	1-①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층수)		• 최고18층 이하
		배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채광·통풍을 고려한 방향 배치 • 순천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세부지침을 고려한 배치
		형태		• 단지 내외 옹벽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석 및 식재 등 설치 • 담장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생울타리 담장 계획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지정 ※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건축선 적용대상에서 제외